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주식회사 실리콘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자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6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외부인사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 (지원부서)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

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